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57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박충권·박성훈·김 건

서천호 · 엄태영 · 박정훈

백종헌 · 김승수 · 김태호

김성원 • 이인선 • 최수진

김상훈 • 진종오 • 권영진

김도읍 · 김정재 · 정점식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의 경우,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.

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,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(안 제21조의3 신설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3(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등)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(訴訟代理) 등의 지원(이하"법률상담등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「법률구조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법률상담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대한 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1조의3(보호대상자에 대한 법
	률상담등) ① 국가는 보호대상
	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
	대리(訴訟代理) 등의 지원(이하
	"법률상담등"이라 한다)을 할
	<u>수 있다.</u>
	② 통일부장관은 「법률구조
	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
	조공단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
	대한변호사협회,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
	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
	<u>수 있다.</u>
	③ 법률상담등에 필요한 사항
	은 통일부장관이 법무부장관
	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하
	<u>여 정한다.</u>
	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
	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
	<u>수 있다.</u>
	⑤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
	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

통령령으로 정한다.